

##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2008. 03. 02 최초제정

2009. 08. 01 부분개정

2025. 12. 01 부분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5.12.01.>

1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
3. 자체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
4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요구하는 각종 심의에 관한 사항<신설 2025.12.01.>

②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야 한다.<신설 2025.12.01.>

**제3조(구성)** ①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(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외부인사 위촉 시 우리 대학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한다.<개정 2025.12.01.>

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(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<개정 2025.12.01.>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3.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(임기)**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실무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25.12.01.>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.

**제7조(세칙)** 그 밖에 이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